계량기 점검(검침·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의안번호 : 제1109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16년 4월 7일

○ 회부일자 : 2016년 4월 11일

2. 제 안 이 유

○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인 계량기 점검(검침·송달) 및 교체업무를 「수도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위탁함으로써 비정규직인 종사원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획기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업무만족도 향상에 따른 대시민서비스 제고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대행사업 위탁 승인 전 의회 의결을 구함.

3. 주 요 내 용

가. 계량기 점검(검침·송달) 및 교체업무 대행사업(위탁) 개요

- 수탁자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위·수탁기간

· 계량기 교체 : 2016.07.14 ~ 2021.07.13(5년)

· 계량기 점검 : 2016.07.22 ~ 2021.07.21(5년)

- 대행사업 위탁계약 주요내용 및 종사원

① 계량기 점검(검침·송달)

· 검침 : 연 11.652천 건(월평균 971천 건)

· 고지서 송달 : 연 10,944천 건(월평균 912천 건)

· 기타 정수처분예고서 및 안내문(동파예방, 요금관련) 송달 등

② 계량기 교체 : 연 225천 건(월평균 18.8천 건)

③ 종사원 현황

구 분	계	계량기 점검원	계량기 교체원	근로형태
인 원	428명	354명	74명	기간제근로자 (1년 계약)

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위탁) 필요성

-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수도사업의 단순 하고 반복적인 업무인 계량기 점검(검침, 송달) 및 교체업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여 불안정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계량기 점검(검침·송달) 및 교체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만 한시계약직으로 종사원을 채용하여 고용불안에 따른 업무 소홀 우려가 있음
- 현행 계량기 점검(검침·송달) 및 교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1년)는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고용할 수가 없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위탁) 기대효과

- 市 예산 편성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상수도사업의 기본업무인 계량기 점검 (검침·송달) 및 교체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
- 민간에 위탁 시에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절감할 수 있음

라. 추진 계획

- '16. 3~6월 : 업무위탁을 위한 규정 정비, 근로조건 등 협의

- '16. 6월 : 업무 위·수탁 계약체결

- '16. 7월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및 근로자 고용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시행령」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서울시 상수도 검침·교체 종사원 정규직화 관련 협약서」

나. 예산조치 : 기확보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 토 의 견

가. 개요

본 동의안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점검
(검침·송달) 및 교체업무를 「수도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시설관리공단 조례")」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승인 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추진 현황

계량기 점검은 194만2천 개의 계량기를 2개월 주기로 검침하고 고지서를 송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량기 교체는 연 22만5천 개의 만기·동파계량기 교체와 폐전계량기를 철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업무 종사원수는 계량기 점검 354명, 교체 74명 등 총 428명에 달하고있음.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종사원 현황〉

구 분	합 계	부 중	서 부	동	북 부	강 서	남부	강 남	강 동	자 재
점 검	354	43	51	49	44	49	51	33	34	_
교체	74	7	9	10	10	7	9	6	7	9
합 계	428	50	60	59	54	56	60	39	41	9

○ 동 업무 추진은 당초 수도사업소별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다가 2000년 초·중반 이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수행해 오던 중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침에 따라 종사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고용 방침을 정하고, 노동조건, 임금 및 고용형태 등에 대한 서울시 관련 부서와 노동조합과의 합의1) 이후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존 종사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채용(1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

구 분		계량기 점검	계량기 교체	비고
공무원 직접 수행		~ '01. 7. 21	~ '05. 7. 21	
민간위탁		'01. 7. 22 ~ '15. 7. 21	'05. 7. 22 ~ '15. 6. 30	
상수도사업본부 기간제		'15. 7. 22 ~ '16. 7. 21	'15. 7. 14 ~ '16. 7. 13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16. 7. 22 ~ '17. 7. 13	'16. 7. 14 ~ '17. 7. 13	동의안 제출
대행(위탁)	공무직	'17. 7. 14 ~	'17. 7. 14 ~	

2)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추진

 2014년 3월에 발표한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2)에서는 민간위탁조례 상 민간위탁으로 부적합한 사무내용은 관련 규정을 삭제3)하도록 하였고 현행 민간위탁 사무 중 관리방식 전환 검토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 추진방식을 재검토하여 현 위탁기간 종료 이후 추진방식을 전환하도록 한 바 있으며, 상기 계획에서는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일반용역으로 전환하도록 제안하였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4.8월) 中

- 민간위탁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
- 용 역: 주로 <u>단순 지원사무를 대상</u>으로 민간부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의 부수적인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는 용역방식이 적정)

^{1) 「}서울시 상수도 검침·교체 종사원 정규직화 관련 협약서」('15.7.13)

²⁾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4호('14.3.11)

³⁾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9호 "청소, 경비, 매점, 부설 주차장 운영"규정 삭제('14.5.14 개정)

〈관리방식 전환 검토대상〉

연번	위 탁 사 무 명	전환방식	소관부서		
1	상수도 계량기 점검(8건)		상수도사업본부		
2	상수도 계량기 교체(9건)	일반용역			
3	체납차량번호판영치지원(1건)		38세금징수과		
4	예술영재 지원(2건)	보조사업	문화예술과		
5	수상훈련장 운영(4건)	수상훈련장 운영(4건)			
6	한강자전거 대여(1건)	사용수익허가	한강사업본부		
7	보라매공원 주차장 운영(1건)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015년 6월에는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의 계속적인 추진과 종사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검침 및 교체 종사원 시설관리공단 고용계획」4)을 수립하여 시설관리공단 고용 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달리 시설관리공단 업무 대행(위탁)을 고려하여 '민간위탁금'이 아닌 '공기관등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음.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316 공기관등 경상적대행사업비

<지방직영기업>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u>공기관에 대행위탁하여</u>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307-05 민간위탁금

<지방직영기업>

- 1.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
 - 가. 시가지·도로청소, 상수도검침 대행사업비 등
- 따라서 기존 계량기 점검 및 교체 업무는 「수도법시행령」 제35조제1항 제1호에서 단순위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행정

⁴⁾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0호('15.6.18)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민간 위탁⁵⁾을 해 왔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과 「검침 및 교체 종사원 시설공단 고용계획」을 근거로 동 사무에 대한 관리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일반용역으로 전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시설 관리공단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 하였음.

○ 본 동의안은 「서울시 상수도 검침·교체 종사원 정규직화 관련 협약서」 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도요금 부과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관리공단이 해당 종사원을 고용 승계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의안 처리 이후 후속 절차6)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그리고 대행기간에 대해서는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는 「수도법시행령」에서 단순위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사원의 고용안정 측면에서 대행(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개정⁷⁾이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계약심사, 사후관리 및 종합성과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같은

^{5) 「}서울특별시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12.4.6 제출)

⁶⁾ 시설관리공단 업무 대행을 위한 규정 정비, 근로조건 등 협의 → 대행 업무 위·수탁 계약체결 → 시설 관리공단 업무 대행 및 근로자 고용 승계

⁷⁾ 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_제268회 정례회 시 조례 개정 계획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한 이후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임.

3) 종합의견

○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에 따른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에 대한 관리 방식 전환과 「검침 및 교체 종사원 시설공단 고용계획」 및 「서울시 상수도 검침·교체 종사원 정규직화 관련 협약서」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업무 대행 및 종사원 고용 승계 측면에서 본 동의안 처리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급 성은 인정됨.

다만, 본 동의안의 처리와는 별개로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시설관리 공단 대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 및 별도의 관리지침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관계법령

「수도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u>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수도법시행령」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u>단순위탁</u> :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u>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u>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u>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u>,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4.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 5.「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 6.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 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 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u>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u>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 아. (생략)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
- 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
-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5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⑦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1.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공동주택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